# 2019년 귀속 소득 · 세액공제증명서류 : 기본내역 [건강보험료]

(조회기간 : 2019년 01 ~ 12월)

# ■ 가입자 인적사항

| 성 명 | 주 민 등 록 번 호  |  |
|-----|--------------|--|
| 전경희 | 960616-***** |  |

### ■ 건강보험료(직장가입자) 내역

(단위:원)

| 월별 보수월액(고지금액) |           | 소득월액(납부금액) |        |         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|
| 결길            | 건강보험료①    | 장기요양보험료②   | 건강보험료③ | 장기요양보험료④ |
| 01월           | 83,500    | 7,100      | 0      | 0        |
| 02월           | 83,500    | 7,100      | 0      | 0        |
| 03월           | 83,500    | 7,100      | 0      | 0        |
| 04월           | 68,490    | 5,820      | 0      | 0        |
| 05월           | 68,490    | 5,820      | 0      | 0        |
| 06월           | 68,490    | 5,820      | 0      | 0        |
| 07월           | 68,490    | 5,820      | 0      | 0        |
| 08월           | 68,490    | 5,820      | 0      | 0        |
| 09월           | 68,490    | 5,820      | 0      | 0        |
| 10월           | 68,490    | 5,820      | 0      | 0        |
| 11월           | 68,490    | 5,820      | 0      | 0        |
| 12월           | 68,490    | 5,820      | 0      | 0        |
| 연말정산          | -101,500  | -7,490     |        |          |
| 합계            | 765,410   | 66,190     | 0      | 0        |
| 총합계           | 총합계 831,6 |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|

1. 보수월액 보험료 :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지한 금액이며,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과 다른 경우 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소득공제대상금액은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입니다. (둘 이상의 회사에 근무한 경우에는 합산한 보험료가 제공됩니다.)

-1-

2. 소득월액 보험료 : 연간 납부한 금액이 제공됩니다.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# 2019년 귀속 소득 · 세액공제증명서류 [국민연금보험료]

(조회기간 : 2019년 01 ~ 12월)

# ■ 가입자 인적사항

| 성 명 | 주 민 등 록 번 호  |  |
|-----|--------------|--|
| 전경희 | 960616-***** |  |

■ 국민연금보험료 내역 (단위:원)

| 월별           | 직장가입자 고지금액 | 지역가입자 등 납부금액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01월          | 116,320    | 0            |
| 02월          | 116,320    | 0            |
| 03월          | 116,320    | 0            |
| 04월          | 116,320    | 0            |
| 05월          | 116,320    | 0            |
| 06월          | 116,320    | 0            |
| 07월          | 98,680     | 0            |
| 08월          | 98,680     | 0            |
| 09월          | 98,680     | 0            |
| 10월          | 98,680     | 0            |
| 11월          | 98,680     | 0            |
| 12월          | 98,680     | 0            |
| 직장가입자 소급고지금액 | 0          |              |
| 추납보접         | 0          |              |
| 실업크레딧 납부금액   |            | 0            |
| 합계           | 1,290,000  | 0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총합계        | 1,290,000    |

- 1. 직장가입자 고지금액: 국민연금공단이 고지한 금액이며,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과 다른 경우 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소득공제대상금액은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입니다. (둘 이상의 회사에 근무한 경우 합산한 보험료가 제공됩니다.)
- ※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근로자는 해당 지원금이 공제된 금액으로 월별 고지금액이 제공되며, 지원금 공제 시점에 따라 월별 고지금액이 마이너스(-)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.
- 2. 지역가입자·추납보험료·실업크레딧 납부금액은 연간 납부한 금액이 제공됩니다. (지역가입자 등 납부금액은 12월에 납부 총액 표기)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# 2019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기본(지출처별)내역 [보장성 보험,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]

(조회기간 : 2019년 01 ~ 12월)

#### ■ 계약자 인적사항

| 성 명 | 주 민 등 록 번 호  |  |
|-----|--------------|--|
| 전경희 | 960616-***** |  |

### ■ 보장성보험(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)납입내역

(단위:원)

|     | 상 호          |        | 보험종              | 류     |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|
| 종류  | 사업자번         | 호      | 증권번호             |       | 증권번호 주피보험자  |      | 납입금액 계  |
|     | 종피보험자1(      | 수익자)   | 종피보험자2(          | (수익자) | 종피보험자3(     | 수익자) |         |
|     | 흥국화재해상보      | .험 (주) | 다()사랑플러          | 스보험   |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|
| 보장성 | 102-81-07    | 7***   | 4090386349       | 90000 | 960616-**** | 전경희  | 184,905 |
|     |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|
|     | 엠지손해보험 주식회사  |        | 무배당 건강명의 수술비보험(1 |       |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|
| 보장성 | 220-88-52*** |        | 20165170180      |       | 960616-**** | 전경희  | 190,000 |
|     |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|
|     | 인별합계금액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|      | 374,905 |

1. 공제 대상: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과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(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)

2. 공제 한도 : 100만원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# 2019년 귀속 소득 · 세액공제증명서류 : 기본(지출처별)내역 [의료비]

(조회기간 : 2019년 01 ~ 12월)

# ■ 환자 인적사항

| 성 명 | 주 민 등 록 번 호  |  |
|-----|--------------|--|
| 전경희 | 960616-***** |  |

■ 의료비 지출내역 (단위:원)

| 사 업 자 번 호    | 상 호       | 종 류 | 지출금액 계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|---------|
| **8-01-26*** | 위*****    | 일반  | 2,660   |
| **1-01-36*** | 나***      | 일반  | 13,070  |
| **5-02-90*** | 강**       | 일반  | 24,000  |
| **5-96-22*** | 신*****    | 일반  | 20,100  |
| **1-90-23*** | 원******** | 일반  | 9,000   |
| **2-10-10*** | 온*****    | 일반  | 19,000  |
| **7-90-93*** | 부*****    | 일반  | 39,700  |
| **5-90-45*** | 片*****    | 일반  | 6,700   |
| **7-16-07*** | 메***      | 일반  | 5,400   |
| **5-09-62*** | 스****     | 일반  | 27,700  |
| **1-20-00*** | 척***      | 일반  | 6,400   |
| **3-92-00*** | 송*****    | 일반  | 113,300 |
| **9-96-00*** | 리*****    | 일반  | 68,800  |
| **4-94-00*** | 리*****    | 일반  | 25,000  |

- 1. 공제 대상 :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(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)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%를 초과한 금액
  - ※ 미용 목적 성형(교정)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(보약) 구입비용,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'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 환급금'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,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
- 2. 공제 한도 : 본인·장애인·65세 이상 자·건강보험 산정특례자·난임시술비(한도 없음) 그 외 부양가족(700만원) ※ 시력보정용 안경(콘택트렌즈)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,
  -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(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해당)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# 2019년 귀속 소득 · 세액공제증명서류 : 기본(지출처별)내역 [의료비]

(조회기간 : 2019년 01 ~ 12월)

# ■ 환자 인적사항

| 성 명 | 주 민 등 록 번 호  |  |
|-----|--------------|--|
| 전경희 | 960616-***** |  |

■ 의료비 지출내역 (단위:원)

| 사 업 자 번 호    | 상 호       | 종 류 | 지출금액 계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|-----------|
| **2-82-19*** | (******** | 일반  | 282,480   |
| **2-14-00*** | E****     | 일반  | 243,900   |
| **3-21-00*** | 조*****    | 일반  | 19,580    |
| **8-14-00*** | 새***      | 일반  | 7,900     |
| **1-90-00*** | 척*****    | 일반  | 1,018,900 |
| 의료비 인별합계금액   |           |     | 1,953,590 |
| 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 |           |     | 0         |
| 산후조리원 인별합계금액 |           |     | 0         |
| 인별합계금액       |           |     | 1,953,590 |

- 1. 공제 대상 :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(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)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%를 초과한 금액
  - ※ 미용 목적 성형(교정)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(보약) 구입비용,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'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 환급금'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,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

-5-

- 2. 공제 한도 : 본인·장애인·65세 이상 자·건강보험 산정특례자·난임시술비(한도 없음) 그 외 부양가족(700만원) ※ 시력보정용 안경(콘택트렌즈)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,
  -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(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해당)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# 2019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기본(사용처별)내역 [신용카드]

(조회기간 : 2019년 01 ~ 12월)

#### ■ 사용자 인적사항

| 성 명 | 주 민 등 록 번 호  |  |
|-----|--------------|--|
| 전경희 | 960616-***** |  |

# 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

| 일반         | 전통시장    | 대중교통    | 도서공연등   | 합계금액       |
|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|
| 14,524,474 | 199,300 | 690,700 | 164,800 | 15,579,274 |

■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(단위:원)

| 구분   | 사 업 자 번 호    | 상 호        | 종 류   | 공제대상금액합계  |
|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|
| 신용카드 | 120-81-54*** | 롯데카드 주식회사  | 일반    | 7,656,153 |
| 신용카드 | 120-81-54*** | 롯데카드 주식회사  | 전통시장  | 126,900   |
| 신용카드 | 120-81-54*** | 롯데카드 주식회사  | 대중교통  | 579,410   |
| 신용카드 | 120-81-54*** | 롯데카드 주식회사  | 도서공연등 | 164,800   |
| 신용카드 | 214-81-37*** | 비씨카드 ( 주 ) | 일반    | 3,600     |
| 신용카드 | 202-81-45*** | 삼성카드주식회사   | 일반    | 6,864,721 |
| 신용카드 | 202-81-45*** | 삼성카드주식회사   | 전통시장  | 72,400    |
| 신용카드 | 202-81-45*** | 삼성카드주식회사   | 대중교통  | 103,490   |
| 신용카드 | 375-88-00*** | 한국카카오은행(주) | 대중교통  | 7,800     |
| 인별합  | 계금액          | 금액 15      |       |           |

- 1. 공제대상 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
- 2. 사용처 구분 : 일반사용분, 전통시장사용분, 대중교통이용분,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(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
- ※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'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'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
일련번호: 20200121-21441607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-6-

# 2019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기본(사용처별)내역 [직불카드 등]

(조회기간 : 2019년 01 ~ 12월)

#### ■ 사용자 인적사항

| 성 명 | 주 민 등 록 번 호  |
|-----|--------------|
| 전경희 | 960616-***** |

# 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

| 일반        | 전통시장 | 대중교통 | 도서공연등 | 합계금액      |
|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-|-----------|
| 1,438,763 | 0    | 0    | 0     | 1,438,763 |

# ■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

(단위:원)

| 구분     | 사 업 자 번 호    | 상 호        | 종 류 | 공제대상금액합계  |
|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|
| 직불카드 등 | 214-81-37*** | 비씨카드 ( 주 ) | 일반  | 313,663   |
| 직불카드 등 | 202-81-48*** | 신한카드 주식회사  | 일반  | 1,125,100 |
| 인별합계금액 |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| 1,438,763 |

- 1. 공제대상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
- 2. 사용처 구분: 일반사용분, 전통시장사용분, 대중교통이용분,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(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 ※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'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'를 재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# 2019년 귀속 소득 · 세액공제증명서류 [현금영수증]

(조회기간 : 2019년 01 ~ 12월)

#### ■ 사용자 인적사항

| 성 명 | 주 민 등 록 번 호  |
|-----|--------------|
| 전경희 | 960616-***** |

#### ■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집계

| 일반        | 전통시장  | 대중교통 | 도서공연등 | 합계금액      |
|-----------|-------|------|-------|-----------|
| 2,446,221 | 6,000 | 0    | 0     | 2,452,221 |

■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(단위:원)

|              | 종류     | 월별 공제대상금액 |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|
| 구분           |        | 01월       | 02월     | 03월       | 04월     | 고레디사그에    |
|              |        | 05월       | 06월     | 07월       | 08월     | 공제대상금액    |
|              |        | 09월       | 10월     | 11월       | 12월     |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       | 11,377    | 244,005 | 1,104,933 | 7,643   |           |
| 현금영수증        | 일반거래   | 26,868    | 70,986  | 312,435   | 23,924  | 2,446,221 |
|              |        | 42,824    | 156,774 | 75,534    | 368,918 |           |
| 현금영수증 전통시장거래 |        | 0         | 0       | 0         | 0       |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전통시장거래 | 0         | 0       | 0         | 0       | 6,000     |
|              |        | 0         | 0       | 0         | 6,000   |           |

- 1. 공제대상 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,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(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
- ※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%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(「홈택스>상담/제보>현금영수증 미발급>미발급신고하기」) 또는 세무서(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서 제출)에 신청

일련번호: 20200121-21441607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-8-

# 2019년 귀속 소득 · 세액공제증명서류 : 기본(지출처별)내역[기부금]

(조회기간 : 2019년 01~12월)

# ■ 기부자 인적사항

| 성 명 | 주 민 등 록 번 호  |
|-----|--------------|
| 전경희 | 960616-***** |

■ 기부금 지출내역 (단위:원)

| 사업자번호        | 단체명                   | 기부유형       | 기부금액<br>합계 | 공제대상<br>기부금액 | 기부장려금<br>신청금액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603-82-07337 | (사)한국백혈병소<br>아암협회부산지회 | 종교단체외지정기부금 | 10,000     | 10,000       | 0             |
| 인별합계금액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| 10,000        |

- ※ 기부금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기부금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하므로 조회기간을 선택하여 조회한 경우에도 1년 전체 기부금액이 조회됩니다.
- 1. 공제 대상 : 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(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)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
- ※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'정치자금기부금'과 '우리사주조합기부금'은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기부금에 한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
-9-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